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48
------------	------

발의연월일 : 2017. 10. 27.

발의자 : 윤후덕 · 안호영 · 최인호
안규백 · 황희 · 이원욱
윤관석 · 민홍철 · 전현희
임종성 · 조정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된 자는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금지의무,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의무가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등록주택 현황과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사업자별 주택 보유호수, 주택 유형 등의 세부적인 통계가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축하는 정보체계에서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각 여부를 재산세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확인하고, 사업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 주소지를 통해 확인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하며,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와 월세

세액공제자료 등 임대차계약 자료와 대조하여 임대차계약 신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임대주택 보유 및 임대차 현황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에 대한 자료 요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자료에 대한 요청근거 마련(안 제60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정보체계 운영 시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 국세 · 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정보체계상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국세·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 벌금에 처한다.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